

제기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I. 예정신고와 납부

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외국법인인 경우에는 50일)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신고 시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적용한다. 그러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대손세액공제와 자산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인사업자

1) 고지납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하며, 대신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 단수금액은 버림)을 결정하여 예정고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이때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분	납세고지서발부기간	징수기한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4.1.~ 4.10.	4.25.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10.1.~10.10.	10.25.

세무서장이 결정한 고지세액을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시 모든 과세기간(6개월)을 대상으로 확정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2) 신고납부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라도 예정신고 할 수 있다.

-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위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정(예정고지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II.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정신고누락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신고한다.

대손세액공제(가감), 일반환급,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가산세 및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에만 적용된다.

III.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념	환급기한
일반환급	과세기간(6개월)단위로 환급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조기환급기간 단위로 환급	각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경정시 환급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	지체없이

1.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2. 조기환급

1) 조기환급의 의미

조기환급이란 각 과세기간별·예정신고기간별 또는 조기환급기간별(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기환급대상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이는 영세율사업자와 설비투자를 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단,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 함)
- ②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 조기환급의 절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IV. 결정·경정

납세인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과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하여야 하지만,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한다.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V.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④ 영세율 첨부서류
- 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⑥ 대손세액공제신고서(확정신고시에만 첨부)
- ⑦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직사업서비스업, 음식점 산후조리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함)
- ⑧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한함)
- ⑨ 기타 서류